

□ 적용대상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* (가점대상대학) 고려대 세종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,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 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 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 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